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37 호 2024. 1. 18.(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8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기간단축) 사항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9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76호[공시송달공고]..... 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85호[공시송달공고]..... 4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8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기간단축) 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기간단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고시내역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m ²)	허가기간		점용목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당초	변경	
제2022 -7호	박관기 (56.11.20.)	울산광역시 중구 강북로 105 2802호	울산광역시 복구 동해안로 1606 일원	19.125 (125mm*1개)	당초	'22.06.01. ~ '27.05.31.	활어도소매업 운영을 위한 해수인배수 관로 매설
					변경	'22.06.01. ~ '24.1.1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새장터7길 20-1	염포동 299-11	2024. 1. 11.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1.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76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 15. ~ 2024. 1. 30. (15일)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연번	위반건축물 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원)
1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527-1번지 (203호)	전**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47,000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052-241-8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85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 16. ~ 2024. 1. 31. (16일)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연번	위반건축물 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원)
1	진장명촌지구47B10L (진장9길143)	고**	무단용도변경 및 대수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16,454,000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052-241-8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